

일반 계약 조건 (GTC)

Groz-Beckert Sales & Services Vietnam Company Limited의 기업고객용

(1) 다음의 일반 계약 조건은 기업에 해당하는 고객, 즉 상거래를 위해서나 자영업 상거래 활동을 위해서 물품을 주문하거나 받는 고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본 계약 조건은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일상 활동을 위해서 당사의 제품을 매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일반 계약 조건은 물품의 공급에 적용됩니다.

A. 일반 계약조건..... 1

- \$1. 적용 범위 1
- \$2. 계약의 체결 1
- \$3. 공급과 이행의 범위 및 이행 기한 2
- \$4. 가격, 비용 2
- \$5. 지불 조건 3
- \$6. 권원(權原)의 유보 4
- \$7. 고객의 협력의무 5
- \$8. 결함에 대한 책임 및 일반적 책임 5
- \$9. 산업재산권, 공구, 모델 및 금형 7
- \$10. 각종 조항, 불가항력 사건, 이행지, 관할지, 준거법, 데이터 처리, 일부무효 조항 7

B. 물품 공급에 대한 특별 계약 조건..... 8

- \$1. 적용 범위 8
- \$2. 서비스의 범위 8
- \$3.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보충 조항 8
- \$4.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보완적 제품 보증 규정 9

A. 일반 계약조건

\$1. 적용 범위

(1) 본 일반 계약 조건은 **Groz-Beckert Sales & Services Vietnam Company Limited(“GBVS”)**에 의한 물품의 공급에 적용됩니다.

(2) 고객과 당사의 관계는 오로지 본 일반 계약 조건과 수시로 송낙하는 주문확인서에 의해서만 규율됩니다. 이는 계약 협상의 시작이나 계약의 시작과 같은, 고객과의 모든 사업적 접촉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계약에도 적용되며, 이는 비록 다시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언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그러합니다. 고객의 일반 주문이나 매입 조건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거부됩니다.

(3) 개별 사례에서, 스스로 계약 당사자가 되려는 의도가 없는 개인이나 회사와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본 일반 계약 조건의 책임제한이 그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성립하는 데에도 본 일반 계약 조건이 포함된 경우에 그러합니다.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제3자가 본 일반 계약 조건을 인지했거나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가 특히 그에 해당합니다.

(4) 고객이 당사의 서비스 및 납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 일반 계약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의 체결

(1)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당사의 청약은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어떤 주문에 대하여 당사가 주문 확인서 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이를 확인하기까지는, 또는 당사가 주문에 대한 실행을 착수하기까지는, 당사는 그 주문에 구속되지 아니합니다.

§3. 공급과 이행의 범위 및 이행 기한

- (1) 당사의 공급 범위에 관하여는 당사의 서면 청약서나 당사의 주문확인서가 최종적인 것입니다. 추가로 합의를 하거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서면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의 청약이나 주문확인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데이터, 수치, 그림, 도면, 시스템 요구사항, 등)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사의 청약은 이 정보가 정확한 경우에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고객의 사양에 따라 주문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계약 체결 후에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고객이 당사가 제안한 대안의 솔루션을 수락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만 한하여, 당사는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모든 공급에 대해, 당사는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부분 이행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고객이 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위험을 당사가 알게 되는 경우, 당사는 오직 선지급이나 담보에 상당하는 물품만 공급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이 합리적인 연장 기간 내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이미 체결된 개별 계약을 철회할 당사의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 (4) 납품 및 이행 기간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주문확인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품기간은 당사의 주문확인일로부터 약 4억(曆)주로 합니다. 물품이 그 기간 말까지 발송된 경우, 또는 물품의 발송 준비가 되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납품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품기간의 시작과 납품일의 준수는, 고객이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협력은 무엇이든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제공할 모든 문서를 제공하며, 합의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5) 불가항력 사유나 그 밖에 당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가 비록 이미 계약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당사는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당사의 책임하에 있지 않고 당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당사의 공급업자가 납품을 부정확하게 하거나 납품을 지연함으로써 인해, 당사가 납품을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것을 보지 아니합니다. 일시적인 성격의 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기간에다가 합리적인 착수 기간을 합산한 기간까지 납품기한이나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납품기일이나 이행기일을 연기하도록 하되, 그 착수 기간은 (i) 납품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5개월, (ii) 납품기간이 12개월을 넘는 물품에 대하여는 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6) 당사가 선이행을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의 보수 지불 청구액이 고객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계약 체결 후에 명백해질 때에는, 당사는 당사의 의무인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사가 권리가 있는 지불금이 고객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경우나, 또는 그 지불금에 대해 다른 장애물이 생길 조짐이 보이는 경우가 (예컨대, 수출 또는 수입 금지, 전쟁, 공급업자의 도산, 필수 직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 그에 해당합니다.

§4. 가격, 비용

- (1) 물품 공급에 대한 당사의 가격은 순(純)

가격이며, 서면으로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납품은 (i) 공장에서 또는 그 밖에 당사가 지정하여 미리 합리적으로 고객에게 통보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나 (이는 또한 고객이 그 물품을 그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는 것에 대한 운송비용과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는 (ii) 당사의 주문확인서에 당사가 명시한 그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격은 당사의 청약서나 당사의 주문확인서에 있는 것을 인용하거나, 청약서나 주문확인서에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가격표에 있는 것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 (2)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경비와 출장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출장비와 숙박비는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면 고객이 상환해주는 것으로 하되, 동 영수증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차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출장을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들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현행 출장비 및 경비 요율은 당사의 청약서나 당사의 주문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요율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는 요율은 당사의 최신 가격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불 조건

- (1) 계약상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물품 공급과 관련된 당사의 청구서는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무런 공제 없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공급품을 부분 납품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각각의 부분 납품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분의 보수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2) 고객은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공제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 (3) 고객의 등록된 사업장이 베트남 밖에 있고 고객과의 계약상 약정에서 선지급에 따른

납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특별 약정 없이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현행 해당 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500)에 따라, 고객이 소재한 국가에서 허가된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총이행 가격 금액으로 된, 화환 신용장의 제공에 따라 이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당사가 그러한 화환 신용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당사의 지불 청구액은 납품을 받은 때에 지불 기일이 됩니다. 당사가 공급품을 부분 납품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당사는 각각의 부분 납품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분의 보수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각각의 부분 납품분에 대해 화환 신용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4) 고객이 청구서 수령일 이후 31일째 되는 날부터 지불 불이행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되, 특히 그 연체금액에 대해 연 20%의 이율로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하고, 그 이자는 해당 지불 기일로부터 전액 지불이 되는 날까지(해당일 포함) 매일 복리로 발생합니다.
- (5) 환어음이나 인수어음에 의한 지불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와 같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계정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 (6) 지불은 전적으로 고객이 하도록 합니다. 제3자에 의한 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고객의 의무이행 효과가 없습니다.
- (7) 당사가 분할 지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객이 분할금을 그 전부나 일부를 2주 넘게 연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 전부가 즉시 지불 기일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8) 보수에 대한 당사의 지불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거나 합법적으로 성립된 지불 청구액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보권 행사에도 적용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고객은 동일한 계약적 관계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유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9) 고객이 당사에 대한 지불 청구액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동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절됩니다.

\$6. 권원(權原)의 유보

(1) 체결된 계약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의 현재와 장래의 지불 청구액(담보부 지불 청구액)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공급된 물품에 대한 권원은 당사가 유보합니다.

(2) 담보부 지불 청구액이 전액 지불되기 전에는 유보된 물품은 제3자에게 질권이 설정될 수도 없고 담보로서 양도될 수도 없습니다. 당사 소유의 물품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면 그리고 그렇게 압류되는 한 고객은 즉시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지불 기일이 된 매입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법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하거나 유보된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물품의 반환 요구가 공장 철회의 선언을 포함하지는 아니합니다. 반대로, 당사는 물품의 반환만을 요구하고 계약철회권은 유보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이 지불 기일에 된 매입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과거에 고객에게 합리적인 지불 기한을 정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기한을 정하는 것이 법규상 불필요한 경우에만 당사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유보된 물품을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재판매 및/또는 가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1. 권원의 유보는 당사 물품의 가공, 혼합 또는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의 전체 가치까지 확장되며, 이 경우에는 당사가 제조업체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의 물품을 제3자의 물품과 함께 가공, 혼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에, 후자의 소유권이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는 때에는, 그 가공, 혼합 또는 결합된 물품의 송장 가액에 비례하여 당사가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이 규정은 유보된 물품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고객은 본 계약으로써 해당 물품이나 제품을 재판매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모든 지불 청구액을 당사에게 담보로서 양도하되, 그 전액을 양도하거나 또는 위 조항에 따라 당사의 가능한 공동소유권 지분 금액까지만 양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그 양도를 인수합니다. 위의 제A.6.2조에 언급된 고객의 의무는 양도된 지불 청구액과 관련하여서도 적용됩니다.

3. 당사 외에도, 고객은 해당 지불 청구액을 추심할 권리를 여전히 가집니다. 고객이 당사에 대한 자신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지급불이행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며, 도산절차 개시 신청이 제기된 적이 없으며, 지급능력도 달리 부족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는 위 지불 청구액을 추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에게 양도된 지불 청구액과 그 채무자들에 대해 당사에게

알리고, 추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문서를 인계하고, 양도 사실을 채무자들(제3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담보물의 실현 가능 가액이 당사의 지불 청구액을 10% 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선택한 담보를 해지할 것입니다.

- (5) 고객은 유보된 물품을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은 유보된 물품에 대해 화재, 침수 및 도난에 대해 교체 가액으로 하는 보험에 충분히 자신의 비용으로 들어야 합니다. 유지보수 및 검사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7. 고객의 협력의무

- (1) 고객은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범위 내에서 당사와 당사의 직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 (2) 보다 구체적인 협력 의무는 당사의 주문 확인서나 당사의 청약서에 첨부된 부록으로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8. 결함에 대한 책임 및 일반적 책임

- (1) 당사의 공급품에 있는 결함으로 인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물품의 결함에 대한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특히 이번 1년이 지난 후에는, 당사는 결함에 대한 책임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고객이 당사에 대해 매입 대금 감액이나 계약철회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은, 거부된 차후의 이행에 대한 클레임 이외의 손해배상 클레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결함이 부정하게 은폐된 경우의 클레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제공하는 물품에 있는 결함으로 인한

고객의 클레임은 다음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공급된 물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당사는 결함을 제거하는 방식(결함 시정)으로 또는 결함 없는 품목을 공급하는 방식(교체 납품)으로 그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를 처음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지불 기일이 된 매입 대금을 고객이 지불했는지에 따라서 보완 이행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매입 가격 중에서, 해당 결함과 관련이 있는 합리적인 부분을 유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고객은 보완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당사에게 주어야 하되, 특히 불만이 제기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당사에게 인계해 주어야 합니다. 교체 납품의 경우에는, 고객은 결함 있는 품목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고객의 시설 내에서 결함 시정 작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결함이 있는 물품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특히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및 자재비용은 당사가 부담할 것입니다. 다만, 결함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6. 물품 공급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도 적용됩니다.
7. 고객이 결함 있는 물품을 그 유형과 소기의 용도에 따라 다른 제품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경우에는, 당사는, 결함 있는 물품을 공급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의 체계 내에서, 그 결함 있는 물품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수리되었거나 납품된 결함 없는 제품을 설치 또는 부착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에게 상환할 의무를 집니다.

- 8. 매입한 물품이 납품 후에 고객의 등록된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함 시정 경비나 차후의 납품 경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9. 결함 시정에 대한 고객의 요청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에게 발생비용을 당사에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결함에 대한 고객의 클레임, 특히 결함 있는 물품의 공급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계약 철회, 가격 인하 및 손해 배상에 대한 클레임은 고객이 본 계약 조건에 규정된 결함에 대한 검사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시험 도중이나 그 이후에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예: 편지, 팩스, 이메일 또는 <https://my.groz-beckert.com> 에 있는 고객포털에서) 즉시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결함이 발견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가 이루어졌고, 보고서를 적시에 발송하여 그 기한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보고가 즉시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함을 검사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이러한 의무와 상관없이, 명백한 결함에 대해서는 고객은 납품 후 10일 이내에 텍스트 형식으로 (예: 문자, 팩스, 이메일 또는 <https://my.groz-beckert.com> 에 있는 고객 포털에서)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보고서의 적시 발송은 기한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결함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또는 보고를 게을리하는 경우, 미보고 결함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이 배제됩니다. 당사가 결함을 부정하게 은폐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고객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당사측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의무 위반, 또는
- 당사의 법적 대표자, 집행 임원 또는 대리인들 중 하나에 의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의무의 위반

계약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무(기본적 의무)로서 당사의 납품물에 있는 결함과 관련하여 1차적이지도 않고 2차적이지도 않은 의무.

- 2. 당사측, 당사의 법적 대표자, 집행직원이나 대리인측에서 필수적인 계약 의무(기본적 의무)를 고의나 과실로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해. 위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의미하는 필수적인 계약 의무(기본적 의무)는 해당 계약의 적절한 실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서, 고객이 통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3. 더 나아가, 당사는 당사의 공급품(차후의 이행이나 2차적 의무)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고
- 4. 당사가 명시적으로 제시한 제품 보증(약정)이나 품질 또는 내구성 보증의 범위에 속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것입니다.

(5) 필수적인 계약 의무를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총액은 계약 체결 당시 통상적으로 예상되고 당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다만,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 손해로 국한됩니다.

(6) 중대한 계약 의무를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발생한 고객의 손해배상 클레임에 대해서는

법적 제척 기간이 시작된 때로부터 1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의 손해는 위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7) 의무적인 법적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손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클레임은 본 제8조의 위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법적 시효 내에서 수시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현존합니다.
- (8) 당사자들 간의 계약적 관계의 개시나 합의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제3자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보증이나 책임의 제한은 그러한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9. 산업재산권, 공구, 모델 및 금형

- (1) 당사가 고객의 도면, 모델 또는 샘플이나 사양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당사에게 주문을 하기 전에, 고객은 자신이 주문한 제품이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객이 재산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은 제3자의 여하한 클레임에 대해 당사를 면책해주어야 합니다. 고객이 제3자가 소유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그 제3자에 의한 제조나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법적 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발생비용에 대해 상환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2) 당사가 납품을 위해 공구, 금형, 모델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권원은 당사가 보유합니다. 위와 같은 생산을 위해 당사가 고객에게 보수금을 일부 요구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품목에 대해 당사가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고객이 그 항목의 제조에 대하여 전액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10. 각종 조항, 불가항력 사건, 이행지, 관할지, 준거법, 데이터 처리, 일부무효 조항

- (1) 당사나 고객의 의무이행이 화재, 자연재해, 전쟁, 반란, 사보타주, 금수조치, 감염병, 천재지변 또는 정부당국의 조치, 규칙, 규제, 명령, 또는 지침이나 관할법원의 명령과 같은, 불가항력 사건("불가항력 사건")에 의해 방해받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당사자의 의무이행 임무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지체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정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건은 불가항력을 호소하는 관련 당사자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도 넘어서는 것인 경우에 한합니다. 불가항력 사건의 경우, 불가항력을 호소하는 관련 당사자는 그러한 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당할 수도 있는 여하한 손해나 비용 또는 손실의 증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고객이나 당사가 불가항력을 호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그 당사자가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서면 통지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의무를 다시 이행하려고 시도하여야 합니다.
- (2) 본 일반 계약 조건의 여하한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의 체계 내에 있는 어느 규정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라도, 다른 모든 규정이나 약정의 유효성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3) 당사 고객들과의 계약 관계 및 그 밖의 법적 관계는 베트남 법에 의해 규율되며, ‘UN 국제 물품 판매 계약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배제합니다.
- (4) 고객과 당사 사이에 있는 계약의 존재, 그 유효성 또는 그 종료에 관한 의문을 포함하여 본 계약 조건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있는 베트남 국제중재 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t the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하는, 당시 시행 중인 그의 중재 규칙(이 규칙은 본 조항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함)에 따른,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중재지는 베트남 내에 두는 것으로 합니다.

B. 물품 공급에 대한 특별 계약 조건

\$1. 적용 범위

물품 공급에 대한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제A장에 있는 일반 계약 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물품 공급에 관한 특별 계약 조건도 적용됩니다.

\$2. 서비스의 범위

- (1) 운반할 물품에 대한 운송 보험은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부보하기로 합니다. 그 경우 운송 보험은 고객의 명의로 부담으로 부보합니다.
- (2) 당사의 의무는 소유권 이전과 매입 목적물의 인도를 포괄합니다. 매입 목적물의 조립, 설치 또는 형상은,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는 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3.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보충 조항

- (1) 공급의 범위 및 납품

프로그램 수정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웹에서 다운로드하는 온라인 방식, 또는 표준 데이터 캐리어를 통한 목적 코드 형태로 납품됩니다. 납품 범위에는 어플리케이션 문서도 포함됩니다. 고객과 당사 간에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어플리케이션 문서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 매뉴얼로서나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전송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소프트웨어 사용권

- 1.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허여에 대해서는 그 소프트웨어 각각의 라이선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 2. 당사와 고객 간에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고객은 공급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간 제한 없는 단순 사용권을 받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권은 매수인이 하나의 PC(단일 사용자 라이선스)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또는 하나의 기계나 서버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라이선스 하나당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는 것은, 1명의 사용자에게만 또는 약정된 숫자의 동시 사용자들에게만 허용됩니다.
- 3. 추가 권리, 특히 계약상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복제에 대한 권리는 허여되지 않습니다.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 외에는,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고객이 오류를 수정할 권리는, 그 오류 수정을 당사가 과거에 거부하였거나 수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계획대로 작동되도록 민전을 기하기 위한 통상적 데이터 백업의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소프트웨어의 백업본을 고객이 만드는 것도 허용됩니다.

4. 여하한 프로그램 수정에 대해서는 다만 고객이 원래의 프로그램 버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용권이 고객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5. 소프트웨어의 라벨, 특히 저작권 고지사항, 상표, 일련번호 등은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인식할 수 없게끔 만들 수도 없습니다.

\$4.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보완적 제품 보증 규정

- (1) 당사는, 발생할 수 있는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운로드용 자동설치 경로를 통해 업데이트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고객에게 전화 지원을 함으로써 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 (2) 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결함 없는 차후의 납품을 하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에게 차선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선택을 보완적 이행으로 간주하되, 이는 그로 인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프로세스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차선택은, 소스코드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오류나 오작동에 대처하는 임시 솔루션입니다.
- (3) 필요시, 재작업의 경우, 사용자 문서도 그에 맞추어 개정될 것입니다.

시행일: 2020년 6월